

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「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」 고시 개정

- 기존 캔디류에 20% 이하(내용량 기준)로 사용하던 당알코올류,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% 미만 사용토록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‘어린이 기호식품’에 당알코올**을 10%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「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」을 8월 14일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.

*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, 캔디류, 일부 음료류 등
(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조)

**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(D-소비톨, 에리스리톨, 자일리톨 등)

‘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’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‘어린이 기호식품’의 제조·가공, 유통,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,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‘당알코올’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.

‘당알코올’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캔디류에 한해 20% 이하(내용량 기준)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,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%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다.

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·캔디·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깎간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‘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’ 또는 ‘식약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 자료 → 법령정보 → 제개정 고시등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*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> 알림 > 공지 > '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'

**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건강·영양 > 어린이·청소년 식생활 안전관리

<붙임> 「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」 개정 개요
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고지훈 (043-719-2252)
		담당자	사무관	김나영 (043-719-2257)



□ 개요

- (배경)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*을 반영하여 당알코올 사용량 기준을 강화

*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26.1.1. 시행) : 당알코올류를 10% 이상 함유한 제품에 “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” 등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

- (대상) 어린이 기호식품(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)

구 분	가공식품	조리식품
간식용	○ 과자(한과류 제외)/ 캔디류/ 빵류/ 초콜릿류 ○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/ 발효유류(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) ○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○ 음료류 중 과·채주스/ 과·채음료/ 탄산음료/ 유산균음료/ 혼합음료 ○ 빙과류 중 빙과/ 아이스크림류	○ 제과·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
식사대용	○ 면류(용기면만 해당) ○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/햄버거/샌드위치	○ 햄버거, 피자

- (개정내용) 식품첨가물 중 당알코올류*의 사용량 기준 개정

- 캔디류에 당알코올 사용량 총합으로서 20% 이하 →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당알코올 사용량 10% 미만

* 락티톨, 만니톨, D-말티톨, 말티톨시럽, D-소비톨, D-소비톨액, 에리스리톨, 이소말트, 자일리톨, 폴리글리시톨시럽

< ※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>

- ✓ (개요)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니면서, 안전기준, 영양기준,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*을 모두 충족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인증하는 제도



<품질인증 도안>

- * ① **안전기준** HACCP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
- ② **영양기준** 당류 무첨가(과채주스에 한함), 영양성분(단백질, 식이섬유, 비타민, 무기질) 중 2가지 이상 기준 충족
- ③ **식품첨가물 기준** 타르색소·보존료 사용 금지, 당알코올류 사용량 제한 등